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계비에 대한 압류방지계좌 개설 근거 마련〉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77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생계비에 대한 압류방지계좌 개설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1.

3. 회 부 일 : 2024. 1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실무 단계에서 최저생계비로 특정할 수 있는 예금 판단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모든 예금을 일단 압류하고, 이후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제 받아야 하는 상황임.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예금이 압류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 및 제13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생계비에 대한 압류방지계좌 개설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지구별수협 또는 수협중앙회에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생계비에 대한 채권은 압류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 제138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0조의5(생계비계좌) ① 지구별수협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지구별수협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지구별수협은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

<신 설>	<u>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u> <u>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u> <u>제138조의2(생계비계좌) ① 중앙회는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u> <u>② 중앙회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u> <u>③ 중앙회는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u> <u>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u>
--------------------	---

나. 검토의견

- 채권의 압류와 관련하여 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 등)에 대해 갖고 있는 예금 등의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으면 은행 등은 채무자인 예금자에게 예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

- 채권에 대한 압류업무는 「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하고, 해당 압류명령이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금융기관이 이를 접수해 등록·실행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 다만, 「민사집행법」은 부양료, 급여채권, 퇴직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¹⁾ 등 공익적 또는 사회정책적 사유가 있는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등 개별법에서도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압류금지 채권의 종류 및 근거법령]

구 분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채권 (제246조제1항)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법령에 따른 압류가 금지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제1항) 수급품을 받을 권리 - (제35조제2항)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연금수급권

1)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185만원임

권리	- (제58조제3항)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 (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 (제38조제2항)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제88조제3항)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 (의료급여법 제18조제1항)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 (제18조제2항)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1항)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 (제27조제2항)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등 다수
----	---

□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비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별도의 계좌, 이른바 ‘압류방지통장’이 마련되어 있음²⁾.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①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압류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① 수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별법상 압류방지채권 및 압류방지통장의 근거]

법률	전용계좌	압류금지 예금채권	압류방지 통장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만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27조의2)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제35조제2항)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법	급여만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54조의2)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제58조제3항)	국민연금 안심통장
고용보험법	실업급여만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37조의2)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제38조제2항)	행복지킴이 통장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보험급여만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82조)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제88조제3항)	행복지킴이 통장
의료급여법	요양비등만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12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 (제18조제2항)	행복지킴이 통장
한부모가족 지원법	복지급여만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제12조의5)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제27조제2항)	행복지킴이 통장

주 *행복지킴이 통장: 보건복지부 주관의 금융권 공통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수협의 압류방지통장 현황]

압류방지통장	가입대상	실적
수협 행복지킴이 통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418백만원 (6,522건)
	·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급여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등 급여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연금급여수급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권자	

	·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수급권자 ·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권자	
수협어업인 희망지킴이 통장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수급권자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수급권자	328백만원 (1,086건)
수협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실명의 개인	1,848백만원 (1,361건)
수협희망 지킴이통장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실명의 개인	41백만원 (187건)
수협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군인연금을 수급하는 실명의 개인	8백만원 (16건)
수협양식재해 보험안심통장	·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	- (2건)

자료: 수협중앙회

□ 그런데, 같은 압류금지채권임에도 불구하고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압류방지통장의 개설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은행 등은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채권 전부에 대해 지급을 정지하고 있어 1개월치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액수의 예금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1개월치의 생계비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하고³⁾, 이 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어 생계에 곤란을 겪는 채무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3)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법원의 압류명령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통상 신청부터 결정까지 2주일에서 1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인지세, 송달료, 법무사 비용 등이 발생함.

□ 이에 개정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 생계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민사집행법」상 생계비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은 현재 1개월치 생계비에 대해서는 다른 연금, 복지급여 등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압류방지통장’의 개설근거가 없어 일단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으면 생계비에 상당하는 예금액의 인출을 위해 별도로 압류명령의 취소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채권자의 입장에서 압류방지통장 외 나머지 계좌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여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한 제약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취지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입법 방식에 대한 검토와 개정안 수용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우선, 입법형식과 관련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법」⁴⁾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생계비에 대한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에 압류방지통장 개설의 근거를 두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다음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채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보호되는 생계비의 기준을 개정안(‘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처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하기보다는 「민사집행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공무원연금법」은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금액에 대해 「민사집행법」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에서 「민사집행법」 규정을 인용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⁵⁾.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①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압류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5)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3) 다음, 개정안 제138조의2는 수협중앙회에 생계비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는 지구별·업종별수협과 달리 수신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는 주체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관계 기관 등의 의견으로, 우선 **해양수산부**는 특정 채권에 대한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개정안의 경우 「민사집행법」)에서 압류방지통장의 개설에 대한 근거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그 밖에 개정안 의결 시 생계비 계좌 운용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기존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수협중앙회**는 압류금지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개정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수협법과 같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는 것보다는 민사집행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고, 압류방지상품의 출시를 위해서는 전체 금융기관과의 협의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문 의 처
02)6788-5422